

**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(변경)**

충청남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「2024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」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4. 7. 31.

**충청남도지사**

※ 이 사업은 이미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지원이 아니며 지원내용, 자격요건, 구비서류, 지원 중단사유 등 공고문과 자주묻는질문답변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**1 사업개요**

**가. 사업명** :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

**나. 사업대상** :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, 주소를 둘 예정인 19세 ~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

**다. 지원내용** : 주택 임차보증금(전·월세)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

**라. 접수기간** : 2024년 상시 모집(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종료)

**마. 취급은행** : NH농협은행(구 농협중앙회), 하나은행

- 은행은 이 사업의 적격자로 선정된 후에 방문

**2 지원내용**

**가. 대출한도** :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80% 내에서 1억 5천만원 한도

**나. 대출금리** : 최초 사업 신청 시, 아래 협약금리 중 본인이 선택하며 선택 금리에서 아래 ‘[2]-다’의 지원을 적용한 이자 부담

- [NH농협은행] 5.2%(고정) / [하나은행] 신잔액COFIX\*(6개월) + 2.1%  
\* COFIX 확인 :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→ 금융상품정보 → COFIX

**다. 이자지원** : 신청자가 선택한 ‘[2]-나’의 대출금리의 절반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요건에 따라 최대 1.5%p 추가 지원

- 기본 지원과 추가 지원을 합산한 지원 금리의 상한은 4.5%임
- 변동금리는 대출금리가 6%를 초과하더라도 기본 지원은 최대 3%임
- ※ 단, 선택금리에서 도 기본 지원을 제외한 자부담은 최소 1%(이후 추가지원 적용)
- **최종 자부담 = 대출금리([2]-나) - 대출금리([2]-나)의 절반 - 추가지원**

[표] 추가 금리지원 종류 및 범위

기준 중위소득 <sup>주1)</sup>		자녀 수 <sup>주2)</sup>		신혼부부 <sup>주3)</sup>	
120% 이하	0.2%p	1자녀	0.3%p	신혼부부	0.3%p
100% 이하	0.3%p	2자녀	0.5%p		
80% 이하	0.4%p	3자녀	0.7%p		
60% 이하	0.5%p				

주1)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3-150호를 적용(3쪽 확인)

주2)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함께 등재된 민법상 미성년 자녀

주3)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를 의미 (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)

**라. 대출기간** : 기본 2년 만기 상환 방식이며,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2회 연장하여 총 6년 사용 가능

- ① 최초로 신청하여 적격자로 선정될 때 자녀가 있는 경우 2년
- ② 선정 이후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 당 2년(최대 4년)
- ③ 2022년에 선정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‘[6] 연장 신청’ 참고

### 3 자격요건

※ 아래 ‘가 ~ 다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#### 가. 신청일 현재, 기준 중위소득 150%(세전) 이하 무주택자

① 소득기준은 신청자(및 배우자)를 기준으로 세전 소득과 가구원수를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에 해당하는지 판단

1)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 
- 가구원 수는 본인과 부모를 포함하여 적용(형제·자매는 제외), 본인 소득을 제외한 부모 합산 소득으로 판별

※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년 미만의 단기근로를 의미하며 단기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신청자가 증빙해야 함  
※ 소득이 없는 경우 은행 등의 심사과정에서 대출 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

2) 직장인, 사업자 등 단독세대를 구성하고(예정 포함) 미혼인 경우  
- 가구원 수를 1인으로 적용  
※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, 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”에서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직장인으로 분류

3) 기혼자 : 본인, 배우자, 자녀를 포함한 가구원 수 계산(최소 2인)

[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(보건복지부 고시 2023-150호)]

(단위 : 원)

구분	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150%	월	3,342,668	5,523,914	7,071,986	8,594,870	10,043,603	11,427,554	12,772,491
	연	40,112,010	66,286,962	84,863,826	103,138,434	120,523,230	137,130,642	153,269,892
120%	월	2,674,134	4,419,131	5,657,588	6,875,896	8,034,882	9,142,043	10,217,993
	연	32,089,608	53,029,570	67,891,061	82,510,747	96,418,584	109,704,514	122,615,914
100%	월	2,228,445	3,682,609	4,714,657	5,729,913	6,695,735	7,618,369	8,514,994
	연	26,741,340	44,191,308	56,575,884	68,758,956	80,348,820	91,420,428	102,179,928
80%	월	1,782,756	2,946,087	3,771,726	4,583,930	5,356,588	6,094,695	6,811,995
	연	21,393,072	35,353,046	45,260,707	55,007,165	64,279,056	73,136,342	81,743,942
60%	월	1,337,067	2,209,565	2,828,794	3,437,948	4,017,441	4,571,021	5,108,996
	연	16,044,804	26,514,785	33,945,530	41,255,374	48,209,292	54,852,257	61,307,957

※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자의 ‘세전’ 소득을 ‘연간’으로 환산하여 적용

※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(100%): 7인 가구에서 1인당 월 896,625원씩 증가

② 기혼자(신혼부부 포함)의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

- 주택 소유 시점은 주택 취득세 신고서의 ‘신고일 또는 취득일자’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(단순 분양권 소유는 무주택으로 간주)

#### 나. 충청남도에 소재한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자(신청일 기준 60일 이내)

※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

#### 다. 공공부문 소속 종사자(행정기관·공공기관 등)는 지원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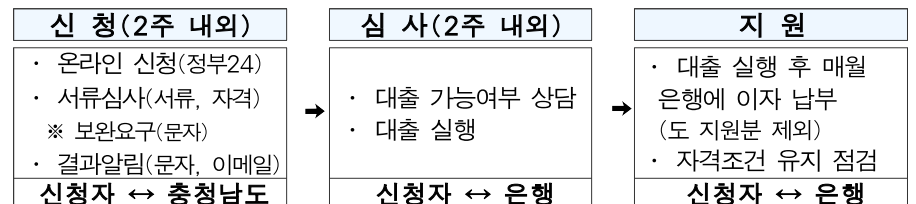
※ 계약직·임기제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·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 가능

#### [이 사업에 지원이 불가능한 ‘공공부문’ 의 범위]

- 「정부조직법」 등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
-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행정기관
- 「국회법」에 따른 국회, 「법원조직법」에 따른 각급 법원
- 「헌법재판소법」에 따른 헌법재판소
-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감사원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
-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
### 4 사업절차

※ 최소 2주 ~ 4주 소요



## 5 접수 및 선정

**가. 접수기간** : 2024년 상시 접수(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할 수 있음)

**나. 신청방법** : 정부24\* 온라인 신청(회원가입, 본인인증절차 필요)

- 정부24 → 보조금24 → (충청남도)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

**다. 구비서류** : 아래 공통서류와 유형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### [서류제출 시 유의사항]

-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**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**
-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서류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
- 발급 원본,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한 서류를 저장·스캔·촬영(PDF·JPG파일)하여 시스템 첨부(그림판 서명본, 컴퓨터 화면 촬영본 등은 인정하지 않음)
- 공공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는 발행번호, 문서확인번호 등 진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
### ① 공통서류

발급서류	발급처 및 발급방법
1. 신청서	정부24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작성
2.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및 자격요건 확인서	사업 공고와 함께 게시된 서식을 자필로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※ 부모님이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경우 부모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
4.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	(온라인)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- 청약자격확인 - 주택소유확인 - 인쇄하기(PDF 저장)
5. 주민등록표 등본, 초본 모두 (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전체표시)	(온라인) 정부24(PDF 저장)
6. 가족관계증명서(본인, 일반)	본인 기준, 일반증명서 ※ 이혼, 사별 등 입증에 필요한 경우 상세증명서
7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이력)	(온라인) 국민건강보험(PDF 저장)
8. 지방세 미과세증명서(재산세, 취득세)	(온라인) 위택스 - 발급 -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- 과세연도(2023~2024) - 관할 자치단체(현재 주소지) - 전국선택 - 재산세(건축물, 주택) 및 취득세(부동산) (PDF 저장)

### ② 신청자 유형별 서류(신청자 및 배우자, 부모 각각)

발급서류		설명	
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 등 현재 소득이 없는 사람	모두 제출	재학증명서	▶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▶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경우 생략 가능 ▶ '소득신고 사실없음' 사실증명원(국세청 홈택스) ※ 파트타임 등의 소득신고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
		사실증명원 (2023년 귀속분)	
		부모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(2023년 귀속분)	▶ 부모 소득으로 심사하는 경우 모두 제출 ▶ 부모의 이혼, 사별 등으로 한 분만 계산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와 소득증빙자료 제출
직장근로자	모두 제출	재직증명서	▶ 신청일 현재 재직증명서 ※ 현 근무처의 1년(12개월)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간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 <b>현 근무처에서 1년 이상 재직</b>
	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2023년 귀속분) ※ 재직기관에서 발급한 직인이 날인된 서류만 인정	▶ 해당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①갑증근로소득증명서, ②급여명세서(2023년 전체) ③소득금액증명원(2023년 귀속분, 홈택스 발급) 제출 ▶ 현 근무처 세전 소득 계(지급받은총액) <b>현 근무처 재직기간이 1년 미만</b> ▶ 임금(연봉)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최근 3개월의 급여명세서 모두 제출 ▶ 현 근무처 세전 소득 합계(지급받은총액)를 환산
사업자	모두 제출	사업자등록증	▶ 현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
	택일	소득금액증명원 (2023년 귀속분)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	▶ 소득확인증명서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)로 대체 가능 / 증명원 상의 소득금액 ▶ 세무사 확인분 / 계산서상 종합소득금액 ▶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
기타소득자	모두 제출	소득금액증명원	▶ 증명원상 소득금액
기혼자(신혼부부 및 예정자 포함) ※ 예정자는 결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혼식장 계약서, 청첩장 등을 제출하고, 적격자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○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(본인, 일반증명서) ○ 배우자 명의의 공통서류 3, 4, 7, 8번 및 신청자 유형별 서류 제출 필요			

※ 자격요건 심사를 위해 위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의·상담 후 제출(☎ 041-635-3987, 2064)

## 라. 대상자 선정

- ①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선정(2주 소요)
  -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보완(제출)을 거부하거나 요구일로부터 5일(주말포함) 이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 처리
- ② 선정결과 알림 : 개별통보(문자메시지 알림 및 이메일 공문 발송)
  - ※ 대출실행 목적으로 은행 방문 시 적격자 확인 공문 및 대출추천서 지참
  - ※ 서류심사 결과 '적격'이더라도,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

## 마. 선정 취소사유

- ① 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, 선정이 취소되며 추후 같은 사업 신청이 불가함
- ②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
-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
- ④ 이차 지원액을 제외한 대출이자를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
- 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된 경우

## 바. 참고사항

-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(보증수수료, 타행은행 송금 수수료 등)은 신청자가 부담하며,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 규정을 따름

## 6 | 연장 신청

**가. 연장내용** : 이미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, 최초 신청 당시의 공고문에 따라 '연장 신청'이 가능한 사람

- ※ 예) 2022년 신청자가 대출 후 2년이 지나 2024년에 연장 신청하려고 할 때, 2022년도 사업 공고문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함

**나. 신청기간** : 대출 만기일 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전

**다. 자격조건** : 연장을 신청하는 연도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

- ※ 예) 2022년 수혜자가 2024년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2024년 요건 충족 필요
- ※ 충청남도 홈페이지-행정-도정공고-공고-고시-2022-89호 참고(5. 이차지원 중단 및 연장 / 2)연장 조건 / ③ 나이, 소득 등 자격요건은 연장 시점의 공고문 상 기준 충족)

**라. 신청방법** : 연장 신청서 및 본 지원사업 연장 시점의 공고문에 기재된 필요서류 제출(신규 신청방법과 동일)

## 7 | 지원 중단사유

※ 주기적으로 대상자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(임차지 주소 유지 여부, 주택소유 여부, 주거급여 수급 여부 등), 자격요건 유지 위반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점부터 발생한 이자와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대출기간(이자 지원기간) 중 충청남도가 아닌 지역으로 전출
- ②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
- ③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경우
- ④ 추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(결혼예정자 혼인신고 미이행)
- 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
  - ※ 충청남도 내 다른 주택으로 임차지를 변경한 경우는 인정하나,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드시 통보해야 함

## 8 | 주의사항

가.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나.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, 이메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서류 보완 요청에 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다.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잔금납부일, 대출만기일 등을 고려하여 1개월 내외의 기간을 두어 신청하기 바라며, 심사 및 대출 지연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## [참고] 사후관리기준 안내문

###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선정자 사후관리기준 안내

충청남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이자지원은 공고 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만 지원되므로 요건 불충족 시 이차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. 또한 계약기간 만료 시 안내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1. 사후관리

- 점검대상 :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선정(대출실행)자
- 점검사항 : 충청남도 거주(주소지 유지) 여부, 주택소유 여부, 주거급여 수급 여부 등 자격요건 유지 사항
  - ※ 주택 소유 여부는 취득세 신고사항(주택분)을 기준으로 함
- 조치사항 : 자격요건 위반 통지 후 이차 지원 중단(중단사유 발생일 기준)
  - ※ 충청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이차지원 중단 및 대출 상환 조치
  - ※ 임차지 변동사항 발생 시 은행(대출실행지점)으로 신고
  - ※ 자격요건 변동사항 발생 시 충청남도 청년정책관(☎041-635-3987/2064)로 연락

#### 2. 충청남도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홍보

- 충청남도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체감도, 추진성과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청년이 원하는 현실적인 맞춤형 정책발굴을 위해 청년 종합실태조사 추진
  - ※ 본 사업 지원자로 선정된 경우, 향후 실태조사 등 설문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하게 응답하여야함
-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알림서비스 제공
  - ※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알림서비스 제공(예정)